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0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가. 제5조(위원회 구성) 제2항의 전체 구성 내용과 제3항의 위원에 대한 세부 규정내용이 상충되어 위원회 전체 구성에 맞게 조정

나. 기금의 주용도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

3. 주요내용

가. 제5조 3항 3호(위원회 구성)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조항 삭제

나. 제5조 4항 간사를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

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을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정(조례안 제5조제3항)

-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이하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구성비율을 맞추고 있음.(현행 조례 제5조)
- 현행 조례의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1명),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위원회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당연직인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회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회장이 이해관계자로서 제척 또는 기피대상이 됨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바, 같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해당 전문가 보강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같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조정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게 됨.(전문가 3분의 1이상 충족 요건에 따름)

2 노인복지기금위원회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안 5조제4항 및 안 제8조제2항)

-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간사와 기금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을 어르신지원팀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어르신복지과 기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면 기금출납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형식적인 직책이 아닌 실질적 기금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	-----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 가. 제5조(위원회 구성) 제2항의 전체구성 내용과 제3항의 위원에 대한 세부규정내용이 상충되어 위원회 전체구성에 맞게 조정
- 나. 기금의 주용도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

2. 주요내용

- 가. 제5조 3항 3호(위원회 구성)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조항 삭제
- 나. 제5조 4항 간사를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
- 다. 제8조(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을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르신지원팀장”을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르신지원팀장”을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2. (생략)</p> <p>3. <u>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강남구지회 회장</u></p> <p>4. (생략)</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어르신지원팀장</u>이 된다.</p> <p>⑤ (생략)</p> <p>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u>어르신복지과</u>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어르신지원팀장</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④ ----- ----- -- <u>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u>--.</p> <p>③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와 기금 간사 및 기금출
납원 명칭 변경 사항으로 비용추계 불필요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사회7급 김래인(02-3423-5912)